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조세범처벌법위반·업무 상횡령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증권거래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8. 14. 2008고합1308,2009고합290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1인

【검 사】배창대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율촌 외 1인

【주문】

]

- 1.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.
- 2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

3.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의 점은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